

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【2023. 6. 22.(목) 10:00】

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(고향사랑기금)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행 정 · 재 무 위 원 회

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

(고향사랑기금)

검 토 보 고

2023년 6월 22일
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기금 설치 개요

- 기 금 명: 고향사랑기금
- 설치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
- 설치목적: 강서구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
- 설치년도: 2023년
- 소관부서: 자치행정과

2. 기금 조성규모

- 기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「고향사랑기금」의 첫 예수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성액은 3천 40만원임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2년도 말 조성액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
		수입(A)	지출(B)	증감(A-B)	
고향사랑 기금	0	30,400	0	30,400	30,400

3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◆ 기금운용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30,400	0	30,400
이자수입	400	0	400
기타수입	30,000	0	30,000

○ 수입계획의 변경은

-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만원 계상
- 기타수입 고향사랑 기부금 3,000만원 계상

◆ 기금운용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30,400	0	30,400
예치금	30,400	0	30,400

○ 지출계획의 변경은

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수입 전부를 예치하는 것으로,
3천 40만원 운용 예정임

4. 종합의견

- 본 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, 「고향사랑기금」의 첫 예수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
-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각 기금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,
-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재원관리에 힘쓰고,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임
- 고향사랑기금은 「고향사랑기부법」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 또는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,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기금의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추진 및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< 예산과 기금의 비교표 >

구 분	일 반 회 계	특 별 회 계	기 금
설치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▪ 특정사업 운영 ▪ 특정자금 보유 운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
재원조달 및 운용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출연금,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
확정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부서 예산요구, 예산부서 예산안편성, 지방의회 심의·의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·조정, 지방의회 심의·의결
집행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-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행과정에서는 합 목적성 차원에서 자율 성과 탄력성이 보장
수입과 지출의 연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 의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
계획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추경예산 편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항목(분야·부문·정책사업)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
결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의회 심의·승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